

의안번호	2202419
의 퇴 인	임광현 의원
회 답 일	2024. 7. 31.
추 계 번호	24E2445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식사대 비과세 한도 상향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의 비과세 한도를 상향조정할 경우, 재정수입 감소는 2025년 2,400억원 등 향후 5년간(2025~2029년) 1조 6,122억원(연평균 3,22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근로자에 대한 식사대 비과세 한도 상향 (안 제12조제3호러목)	-2,400	-4,016	-3,226	-3,236	-3,244	-16,122	-3,224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2조 (비과세소득)	○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의 비과세 한도 상향조정 - 월 20만원 → 월 3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	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2조(비과세소득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이 2025년에 시행되며, 2025년 3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가정
 - 개정안 부칙은 이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나, 2025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가정
 - 이에 2025년에는 연간 세수효과의 4분의 3(4~12월분)만큼, 2026년에는 연말정산으로 기존에 반영되지 못한 2025년 1분기(1~3월) 세수효과가 추가적으로 반영된다고 가정
- 추계기간 동안 근로소득자 수는 2022 귀속연도 근로소득 신고인원을 기준으로 「국회예산정책처 중기경제전망(2023.9.)」의 취업자 수 증가율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전제¹⁾
- 비과세 한도 상향 금액은 월 30만원인 것으로 전제
 -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금액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, 월 30만원으로 가정
- 식사 비과세 한도 상향에 따른 추가 비과세 금액은 연간 120만원(=10만원 × 12개월)으로 모두 동일한 것으로 전제
 - 현행법에 따른 식사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(연간 240만원)이 모두 적용되고 있다고 가정
 -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에 식사대를 지급하던 모든 기업이 급여계정 조정 등을 통해 식사대를 월 30만원 이상으로 인상하여 식사대 비과세 한도인 월 30만원(연간 360만원)이 모두 적용될 것으로 전제
- 국세통계연보 중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의 구간별 인원비율과 구간별 실효세율은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

1) <국회예산정책처의 취업자 수 증가율 전망>

(단위: %)

	2023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
취업자수 증가율	1.2	0.8	0.8	0.5	0.3	0.3	0.2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중기경제전망(2023.9.)

-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분석
 -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개정안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에 국한하여 추계
- 동일한 총급여 구간에 속한 경우 실효세율이 동일한 것으로 전제
- 식사대를 지원받는 근로소득자의 비율은 한국노동패널조사에 따라 식사비용을 보조받는 취업자의 비율인 46.5%(2022년 기준)로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
- 총 세수효과는 총급여 구간별 인원내 식사대를 지원받는 근로소득자 비율(46.5%)과 1인당 세수효과를 곱한 값을 합산하여 도출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추계방법

- (총급여 구간별 인원 및 실효세율 도출)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을 신고한 인원의 총급여 구간별 비율 및 총급여 구간별 실효세율이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
 - 결정세액이 있는 자를 기준으로, 2022년 귀속 근로소득을 신고한 인원의 총급여 구간별 비율이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하되, 근로소득 신고자의 수는 국회예산정책처 중기경제전망(2023.9.)의 취업자 수 증가율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전제
 - 총급여 규모 구간별 실효세율은 총급여액 대비 결정세액의 비율에 해당하며, 실효세율이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
 - 1천만원 이하 구간은 해당되는 인원 비율이 0%이므로 계산에서 제외

[표 2] 2022년 귀속 총급여 규모별 과세소득 신고 인원 수 실효세율

(단위: 명, 백만원)

총급여 (과세소득) 규모	총급여(과세대상 근로소득)		결정세액		실효세율 (E=D/B)
	과세소득 신고 인원 수(A)	금액(B)	인원(C)	금액(D)	
1.5천만 이하	177,982	2,544,165	177,982	2,001	0.1%
2천만 이하	824,105	14,543,226	824,105	53,219	0.4%
3천만 이하	2,894,922	72,660,670	2,894,922	576,956	0.8%
4천만 이하	2,314,031	80,704,290	2,314,031	1,390,385	1.7%
4.5천만 이하	983,247	41,735,453	983,247	1,091,792	2.6%
5천만 이하	859,585	40,796,157	859,585	1,301,937	3.2%
6천만 이하	1,397,685	76,662,510	1,397,685	3,075,333	4.0%
8천만 이하	1,806,448	125,028,434	1,806,448	6,905,400	5.5%
1억 이하	1,058,411	94,122,434	1,058,411	7,654,037	8.1%
2억 이하	1,146,940	148,594,611	1,146,940	20,005,994	13.5%
3억 이하	107,365	25,418,534	107,365	5,706,460	22.4%
5억 이하	41,555	15,498,442	41,555	4,249,038	27.4%
10억 이하	15,243	10,130,066	15,243	3,251,283	32.1%
10억 초과	4,823	9,894,380	4,823	3,882,045	39.2%

주: 결정세액이 있는 자에 대한 현황임

자료: 국세통계연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현황Ⅳ(4-2-4)를 바탕으로 작성

□ (세수효과) 2025년 귀속소득에 대한 추가 비과세 금액 계산과정을 예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

- 과세소득 신고인원 수는 2022년 신고인원 수를 기준으로 ‘국회예산정책처 중기경제전망(2023.9.)’의 취업자 수 증가율 적용
- 1인당 추가 비과세 금액은 연간 120만원으로 적용
- 위의 총급여구간별 실효세율 및 총급여 구간별 인원에 식사대를 지원받는 근로소득자의 비율(46.5%)을 적용하여 세수감소액 도출
- 이후 연도도 위와 같은 계산과정을 적용하나, 징수기준으로 2025년에는 연간 세수효과의 4분의 3(4~12월분)만큼, 2026년에는 연말정산으로 기존에 반영되지 못한 2025년 1분기(1~3월) 세수효과를 추가적으로 반영

[표 3] 2025년 귀속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 시 세수감소액 추계

총급여 규모별	과세소득 신고 인원 수(명)	1인당 추가 비과세 금액(만원)	실효세율	식사대 지원 비율	세수 감소액 (백만원)
1.5천만원 이하	183,011	120	0.1%	46.5%	80
2천만원 이하	847,392		0.4%		1,730
3천만원 이하	2,976,723		0.8%		13,189
4천만원 이하	2,379,418		1.7%		22,874
4.5천만원 이하	1,011,030		2.6%		14,758
5천만원 이하	883,874		3.2%		15,740
6천만원 이하	1,437,179		4.0%		32,170
8천만원 이하	1,857,492		5.5%		57,245
1억원 이하	1,088,318		8.1%		49,384
2억원 이하	1,179,349		13.5%		88,600
3억원 이하	110,399		22.4%		13,830
5억원 이하	42,729		27.4%		6,537
10억원 이하	15,674		32.1%		2,807
10억원 초과	4,959		39.2%		1,086
합 계	14,017,548	—	—	—	320,031

나. 추계결과

□ (재정수입 변화)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근로소득세는 2025년 2,400억원 등 향후 5년간(2025~2029년) 1조 6,122억원(연평균 3,224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4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5~2029년
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	2029	합계	연평균
근로자에 대한 식사대 비과세 한도 상향 (안 제12조제3호러목)	-2,400	-4,016	-3,226	-3,236	-3,244	-16,122	-3,224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어수진	박연서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어수진	02-6788-4745	sjeo1993@assembly.go.kr